

학 칙

[1977.03.01. 제정]	[2017.01.01. 개정]	[2017.03.01. 개정]	[2017.09.25. 개정]	[2018.01.05. 개정]
[2018.03.01. 개정]	[2018.05.01. 개정]	[2018.09.01. 개정]	[2019.02.01. 개정]	[2019.03.01. 개정]
[2019.08.01. 개정]	[2020.02.01. 개정]	[2020.03.01. 개정]	[2020.08.31. 개정]	[2021.03.01. 개정]
[2021.06.10. 개정]	[2021.09.27. 개정]	[2021.11.19. 개정]	[2022.01.26. 개정]	[2022.04.20. 개정]
[2022.06.24. 개정]	[2022.07.20. 개정]	[2022.09.29. 개정]	[2023.01.27. 개정]	[2023.08.28. 개정]
[2024.02.29. 개정]	[2024.08.29. 개정]	[2025.02.26. 개정]	[2025.08.28. 개정]	[2026.02.00.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연성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 학사운영 . 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 대학은 도덕적 품성과 폭넓은 교양 및 실천적 지혜를 함양하기 위해 인성 교육에 힘쓰고, 전문지식, 통섭적 사고와 개방적 협업 능력을 갖추기 위해 융합교육에 역점을 두며, 이웃과 사회 그리고 세계와 공감하고 교류하는 능력 배양을 위해 소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성인.창의인.소통인의 전인적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사회에 기여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3조(명칭) 본 대학은 연성대학교라 한다.

제4조(위치) 본 대학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37번길 34에 둔다.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① 본 대학에 두는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와 같다.<개정 2020.02.01.><개정 2021.03.01.><개정 2021.06.10.><개정 2021.09.27.><개정 2022.04.20.><개정 2022.06.24.><개정 2023.08.28.><개정 2024.08.29.><개정 2025.02.26.><개정 2025.08.28.>

②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 옮긴 모집단위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기존 정원과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4.08.29.>

③ 「고등교육법」 제49조, 제50조2에 근거하여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08.28>

④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08.28>

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산업체 등과의 협약에 의한 주문식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 <신설 2025.08.28>

⑥ 「고등교육법」 제49조2, 제50조4에 근거하여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08.28>

제 2 장 직 제

제6조(교직원) ① 본 대학에는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의 전임교원과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조교를 둔다. <개정 2019.07.15.><개정 2023.01.27>

② 총장은 전임교원 외에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원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08.01.] <개정 2021.09.27.>

제6조의2(강사) ① 제6조 제2항에 따른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2에서 적용한 관련 규정만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08.01.]

제7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개정 2021.09.27.>

③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8조(성희롱 예방 및 처리) ① 학교의 구성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학업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직제) ① 본 대학에는 사무국, 기획처, 교무처, 학생취업처, 입학홍보처, 산학협력처, 행정지원처 및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 <개정 2017.01.01.><개정 2023.01.27>

② 각 처에는 처장을 보하고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부내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7.01.01.>

③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④ 총장 직속기구로 다음 각 호의 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7.09.25., 2019.03.01.>

1. 삭제 <개정 2019.03.01.>
2. 삭제 <개정 2022.04.20>
3. 삭제 <개정 2019.03.01.>
4. 삭제 <신설 2017.09.25.><개정 2024.02.29>
5. 혁신지원사업단 <신설 2019.03.01.>
6. 삭제 <신설 2022.01.26.><개정 2024.08.29.>
7. RISE 사업단 <신설 2022.09.29.><개정 2025.08.28.>
8. 삭제<신설 2024.08.29.><개정 2025.08.28.>
9.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신설 2024.08.29.>
10. 신산업특화선도전문대학사업단 <신설 2025.08.28.>

제 3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10조(수업연한) 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와 같다. <개정 2019.02.01.><개정 2020.02.01.><개정 2021.03.01.><개정 2021.06.10.><개정 2021.09.27.><개정 2021.11.19.><개정 2022.04.20.><개정 2022.06.24.><개정 2023.08.28.><개정 2024.02.29><개정 2024.08.29.><개정 2025.02.26.><개정 2025.08.28.>

제11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1조의1(대학운영) 국가적 재난, 감염병 등 위기단계 발생 시 대학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3.1.>

제11조의2(수업운영) 국가적 재난, 감염병 등 위기단계 발생 시 수업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3.1.>

제 4 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12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학기) ①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하되 교육목적, 전공·학습자 특성, 학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17.03.01.><개정 2020.08.31.>

1.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8월말까지로 한다. <개정 2018.09.01.>

2. 제2학기는 9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다만, 2주(14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 이전에 개강 할 수 있다. <개정 2018.09.01.>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학기, 유연학기, 계절학기 및 실습학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02.29>

③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에 따라 학과(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03.01.><개정 2020.08.31.>

3.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 학기별 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강일을 학기 개시일로 한다. <신설 2023.08.28>

제14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신설 2020.08.31>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개정 2017.03.01.><개정 2020.08.31>

③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7.03.01.>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의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35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내에서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학습자, 교과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3조에 따른 학기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여 강의를 개설하는 집중이수제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03.01.><개정 2020.08.31>

제15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정공휴일
2. 일요일
3. 개교기념일(3월15일)

② 하계방학·동계방학 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임시휴업) 총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03.01.>

제 5 장 신 입 학

제17조(입학시기)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28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9.08.01.]

제18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자의 동일계열 판단 기준은 [별표6]과 같다. <개정 2025.02.26.><개정 2025.08.28.>

제19조(입학 지원절차) 입학 지원 절차는 모집 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0조(입학지원) 삭제 <2019.08.01.>

1. 삭제 <2019.08.01.>

2. 삭제 <2019.08.01.>

3. 삭제 <2019.08.01.>

4. 삭제 <2019.08.01.>

제21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공표한 해당 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범위 내에서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9.08.01.]

제22조(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 공정관리 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8.01.>

제23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 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 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회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08.01.>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8.01.>

제24조(입학허가) ① 입학은 입학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0.03.01.>

② 입학사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03.01.>

제24조의2(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 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입학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 취소를 할 수 있다.

1.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자
2. 총장(학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3.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입학지원방법을 위반한 자
4. 기타 입학 모집요강 등에서 총장이 정한 입학취소 요건 해당자

[전문개정 2019.08.01.]

제26조(산업체 위탁교육) ①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근무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의 경비 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6 장 편입학 및 재입학

제27조(편입학) ① 전문대학 및 대학에서 1학기 이상 이수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편입학 할 수 있다. <개정 2018.01.05.><개정 2022.06.24.>

② 편입학은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여석이 있을 때 허가한다. <개정 2018.01.05.>

③ 편입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06.24.>

제28조(전과) ① 전과는 1학기 이상 수학자에게 허가하되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2회까지 전과할 수 있다. <개정 2018.01.05.><개정 2023.08.28.>

② 학과별 전과 인원은 전입 학과의 교육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과별로 정한다. 단, 교원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는 연간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입학정원의 결원만큼 허용한다.<개정 2018.01.05.><개정 2022.04.20><개정 2024.08.29.>

③ 전과한 자는 소정과목의 전부를 이수하여야 하며, 이미 취득한 학점은 교양 또는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전과(편입, 재입학)에 관한 기준,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의2(자유전공학과 전공배정) ① 자유전공학과와 전공(학과) 배정은 1학년 1학기를 마친 이후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허가한다.

② 자유전공학과 전공(학과)배정,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4.08.29.]

제29조(재입학) ① 자퇴 및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졸업학점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해당학기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은 총정원의 범위 안에서 결원이 있을 때 가능하며 동일학과에 한한다. 단, 재입학자의 소속학과가 폐지 및 통합된 경우 재입학할 수 있는 학과는 재입학자의 신청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확정한다.<개정 2025.02.26.>

제 7 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30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1/4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21.09.27.>

② 휴학은 1회에 1년을 단위로 5회까지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 간과 창업휴학, 졸업유보자의 한학기 휴학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휴학은 군휴학과 일반휴학으로 분류한다.

1. 군 휴 학 : 병역 의무복무로 인한 휴학으로 입영통지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할 것

2. 일반휴학 : 질병, 가정형편, 임신, 출산, 육아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은 병.의원의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29.>

3. 창업휴학 : 창업 혹은 창업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은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된 다음 학기 등록기간에 복학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 전이라도 휴학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복학하여야 한다.<개정 2021.09.27.>

②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전학기로 조기복학 할 수 있다.

③ 복학은 학기개시 후 수업일수1/4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32조(자퇴) ①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이하 “자퇴”라 한다) 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개정 2021.09.27.>

제33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처분 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수업일수 1/4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4을 초과한 자

3. 이중학적을 가진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5. 동일한 학년에서 2회 연속 유급처분을 받은 자
- 6. 산업체 위탁교육생 중 위탁계약 해지자(재직여부 확인기간에 재직여부 확인서류 미제출자 포함) <개정 2021.03.01>

제 8 장 교 과 및 수 업

제34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 전공교과, 교직교과로 구성한다.<개정 2024.02.29>

- ② 삭제 <개정 2020.02.01.><개정 2024.08.29.>
- ③ 모집단위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 ④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은 졸업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학 및 학적 변동된 자는 복학 및 신규허가 학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때 이수한 교과목을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으로 인정한다.
- ⑤ 학과의 교육과정은 대학의 YSU핵심역량에 기반을 두고 개발·운영한다. <개정 2021.09.27.>
- ⑥ 모집단위 특성에 따라 국가자격증과 인증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기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04.20>
- ⑦ 교육과정 개발(편)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2.04.20><개정 2023.08.28>

제34조의1(국내·외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국내·외 대학과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 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08.31]

제35조(교과 이수단위) ①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단, 간호학과의 경우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간호학과 운영 규정을 준수한다.<개정 2025.08.28.>

- ② 학생은 다음과 같이 매 학기별 최소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학점을 초과 이수하지 못한다.

입학년도	최소학점	최대학점
2020학년도 이후 입학생	12학점 이상	21학점 이하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	12학점 이상	24학점 이하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미만을 이수 할 수 있

다. <개정 2017.01.01.><전문개정 2020.02.01.>

또한, 소단위 전공 및 탐색교과목으로 개설되는 교과목 이수 등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최대 26학점까지, 2020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최대 23학점까지 이수 할 수 있고, 모집단위의 폐지 또는 통합에 의한 전과생은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최대 27학점까지, 2020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최대 24학점까지 이수 할 수 있다. <개정 2024.02.29.><개정 2024.08.29.><개정 2025.02.26.>

③ 계절학기는 동계, 하계 방학 중 운영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교양교과의 취득 가능 학점은 2년제 학과는 4학점, 3년제 학과는 6학점, 4년제 학과는 8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21.03.01.><개정 2023.08.28><개정 2024.02.29><개정 2025.08.28.>

④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및 학점 인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삭제 <신설 2020.08.31><개정 2024.02.29>

제36조(학점의 인정 등)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개정 2019.08.01.>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4. 「병역법」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6.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7. 고등교육법 제49조 및 제50조의2항에 따라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한 경우 <신설 2020.3.1.>

8.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 <신설 2020.03.01.>

9. 본교 재학생 대상 학점인정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신설 2020.08.31>

② 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학점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12.01.]

제37조(교과목이수의 인정) 학교·연구기관·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실습 등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범위 안에서 관련 교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제38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주말수업, 계절수업, 방송, 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3.08.28>

② 매학기 개설 교과목은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교무처장이 공고한다.

③ 강의시간표는 강의개시 4주 전에 공고하며, 1교시를 50분으로 한다. 다만, 야간강좌의 경우 45분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5.02.26.>

④ 수업은 09:30부터 22:25까지 강좌를 개설한다. 다만, 야간수업은 산업체 근무자가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38조2(이동수업) ① 제 38조 1항에 따른 수업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 밖의 일정한 장소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수업의 대상, 전공분야, 설치과정 등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03.01.]

제39조(집중수업) 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학기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8.31>

②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교수시간) 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학기당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12시간으로 한다. 다만, 교원의 구분별 또는 보직교원·원로교원의 책임시간 및 초과시간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5.02.26>

③ 교원의 교수시간은 각 학과(전공)의 담당시간을 통산한다. 다만, 부설기관 및 타기관의 강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08.28>

제41조(수강신청)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교무처장이 공고한다.

제42조(출석의무)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 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43조(출석인정) ① 학생이 군입대, 징병검사, 예비군 훈련, 상고의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타의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교수의 재량으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7.01.01.><개정 2020.8.31.><개정 2023.08.28>

② 졸업예정학기 조기취업생의 경우 총 수업일수 1/4를 초과하여 출석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1.01.]

제43조의2(타교생의 수학) 국내·외의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등에 의하여 관계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수학기간 등 운영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01.]

제43조의3(학생의전공이수 등) ① 대학의 학생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4.02.29>

1. 학과(전공)가 제공하는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개정 2024.02.29>
2.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학과(전공)가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신산업 융합전공 및 소단위 전공 <개정 2024.02.29><개정 2024.08.29.>
3.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신설 2024.02.29>
4. 대학이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하여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② 각 전공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4.02.29>

[본조신설 2020.08.31]

제43조의4(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으며,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보충 또는 강의자료 제공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한다.

[본조신설 2023.08.28.]

제 9 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44조(시험) ① 교과목별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2회 이상의 학업 및 직무능력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21.09.27.>

② 시험은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에 따라 실기, 실습, 과제물작성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각 교과목별 수업 시간수의 4분의1 이상을 결석한 자는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1.09.27.>

제45조(추가시험)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교무처로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된 자에 대해서는 과목 담당교수가 추가시험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삭제 <개정 2021.09.27.>

제46조(성적) ① 학업 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학습 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다만, 실험 . 실습 .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의 성적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과목별 학업성적 분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학 업 성 적 분 류 표

등 급	배 점	평 점	비 고
A+	100 ~ 95	4.5	
A	94 ~ 90	4.0	
B+	89 ~ 85	3.5	
B	84 ~ 80	3.0	
C+	79 ~ 75	2.5	
C	74 ~ 70	2.0	
D+	69 ~ 65	1.5	
D	64 ~ 60	1.0	
F	59 이하	0	미취득
P	불계		Pass

③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P로 한다. 이때 취득학점은 인정하고 평점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한다.

④ 수강승인을 받고도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⑤ 성적평가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성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7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이미 인정된 것이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2. 매 학기별 다음의 학점을 초과 취득한 성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개정 2020.2.1.>

가. 2020학년도 이후 입학생: 21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개정 2020.2.1.>

나.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개정 2020.2.1.>

다. 단, 모집단위의 폐지 또는 통합에 의한 전과생에 한하여 2020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23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27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신설 2025.02.26.>

3. 출석 미달 과목의 성적

제48조(학사경고) 학기별 성적 평균 평점이 1.20미만인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학사경고를 한다. <개정 2021.03.01>

제49조(유급) 동일한 학년에서 1, 2학기 연속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유급에 처하며 취득한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 한다. 단, 졸업대상자는 제외한다.<개정 2024.08.29.>

제50조(졸업) ① 총장이 정한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졸업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22.04.20>

② 입학년도별 졸업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다음과 같고 개정일 기준으로 모든 재적생(재학생 및 휴학생)에 적용한다. <개정 2022.04.20><개정 2025.08.28.>

학 제	전체	전공학점	교양학점
전문학사과정 (2년제)	74학점 이상	46학점 이상	6학점 이상
전문학사과정 (3년제)	110학점 이상	68학점 이상	6학점 이상
학사학위과정 (4년제)	130학점 이상	90학점 이상	25학점 이상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130학점 이상		
전문기술석사과정	27학점 이상		

단, 졸업유보생 및 졸업유예생은 마지막 학기에 반드시 1개 교과목(1~3학점)이상 수강신청하고 이수하여야만 한다. [전문개정 2022.04.20]

③ 삭제 <개정 2018.01.05.><개정 2024.08.29.>

④ 학점은행제와 병행하는 시간제 등록생은 본 대학의 동일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이 48학점 이상(3년제 65학점)인 경우 본 대학 명의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⑤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및 졸업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22.04.20>

⑥ 부전공 및 복수전공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24.02.29.>

⑦ 모집단위의 폐지 또는 통합에 의한 전과생은 전공학점을 전문학사과정(2년제)는 40학점 이상, 전문학사과정(3년제)는 6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25.02.26.>

제50조의1(졸업유예) ① 학생이 졸업 연기를 원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졸업을 유예하려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졸업유예신청을 하고 졸업사정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졸업유예신청은 학기 단위로 하고 신청된 학기는 수업료를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④ 졸업유예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8.31]

제51조(후기졸업) ① 전기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② 후기 졸업연도는 전기 졸업연도와 동일하다.

제52조(학위수여·취소) ① 본 대학에서 졸업자격이 부여된 자는 별지 서식 제1호에 의하여 [별 [별표5]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 학사학위 또는 전문기술석사를 수여한다. <개정 2021. 11.19><개정 2025.08.28.>

② 국내·외의 대학교와 복수학위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별도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복수학위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1.]

③ 1997학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거 별지 서식 제1호의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점은행제와 병행하는 시간제등록생의 본 대학에서 졸업자격이 부여된 자는 별지 서식 제2호에 의하여 [별표5]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25.08.28.>

⑤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인증 교육과정 이수자는 별지 서식 제1호에 의하여 [별표5]에 해당하는 학위를 별도로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2.06.24.><개정 2025.08.28.>

⑦ 부전공 및 복수전공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24.02.29>

제52조의2(공학기술교육인증제) ① 공학계열 학과에는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공학기술 교육인증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공학기술교육인증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반 학위과정과 구분되는 인증 학위과정의 명칭을 사용 할 수 있다.

③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53조(수료)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제적 또는 자퇴하였거나,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년 수료 : 37학점 이상 <개정 2021.09.27.>

2. 2학년 수료 : 74학점 이상 <개정 2021.09.27.>

3. 3학년 수료 : 110학점 이상 <개정 2021.09.27.>

4. 4학년 수료 : 130학점 이상 <개정 2025.08.28.>

제 10 장 평 생 교 육

제54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①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산업체와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계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5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 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6조(전공심화과정) ① 삭제 <개정 2018.09.01.><개정 2025.08.28.>

②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개정 2025.08.28.>

1. 산업체경력이 필요한 경우 : 전문대학 입학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전문대학을 전년도에 졸업한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자로 한다.

2. 산업체경력없이 가능한 경우 : [별표6]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

③ 본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체 인사 위원이 1/2 이상 포함된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8.09.01.>

④ 삭제 <개정 2025.08.28.>

제57조(시간제등록생) ① 본 대학에서는 열린 학습사회와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가 없어 정규과정에 입학할 수 없는 자를 위해 개설된 학과에 한하여 시간제등록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시간제등록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③ 시간제등록생의 모집인원은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10%, 당해 학과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단, 전문인을 양성하는 의학·약학계열 및 사범계열은 제외한다.

④ 시간제등록생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 연간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시간제등록생으로 선발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방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8조(학점은행제) ① 총장은 평생학습을 위하여 학점은행제 시행에 따른 학습과정을 관찰청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08.01.]

② 학점은행제의 운영 및 학위수여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08.01.]

③ 학점은행제 수강생 모집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8조의2(학위수여요건)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본 대학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교양 15학점(3년제 21학점) 이상, 전공 45학점(3년제 54학점)이상, 총 80학점(3년제 12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3. 본 대학 동일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이 48학점(3년제 65학점) 이상인 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에 의한 학습과정 이수 및 동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이 총18학점이상인 자 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학습과정 이수, 교육과정 이수 및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연간 42학점(학기당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 ②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는 정규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부설 평생교육원 및 학점은행제에 의한 평가인정 받은 기관을 통해 평가 인정학습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포함한다.
- ③ 제①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는 본 대학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본 대학 학위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의3(학위수여) ① 제58조2의 학위수여조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평생교육진흥원 심의를 거쳐 별지2호 서식에 의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학위의 종별 및 전공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그 학위종류나 전공이 표준 교육과정상의 그것과 유사(유사성판단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조사·확인 후 학점인정심 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결정)할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단, 그 학위 종류나 전공이 해당 대학 등의 정규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의학계열, 사범계열 등 학점은행제 취지에 벗어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중 본 대학에서 48학점(3년제 65학점)이상을 취득한 자에게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8조 ①항에서 이동 <2019.08.01.>]

제59조(비정규 특별과정 운영) ① 본 대학에서는 1년 이내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비정규 특별과정은 본 대학에 설치된 학부(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 ③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11 장 학생 활동

제60조(학생자치기구) ① 건전한 학생활동을 통하여 본 대학의 건학정신과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학풍을 쇄신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은 물론 사명감을 다하여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함을 목적으로 본 대학에 학생회를 두며, 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본 대학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 제적, 자퇴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③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총학생회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61조(학생회비) 총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2조(학생활동의 금지) ① 총학생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부당한 간섭 및 자치활동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09.27.>

③ 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09.27.>

제63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단체운영 및 활동규정에 의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4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년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해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4조의2(장애학생 지원) ① 장애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장애및다문화학생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② 장애로 인해 학습 및 대학생활에 있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학생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장애학생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09.27.]

제65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 광고 .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제66조(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 장 규율 및 상벌

제67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질을 함양토록 한다.

제68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9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본 대학 학칙을 위반한 자
2.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가망이 없는 자
3.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4.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성희롱을 한 자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모든 징계대상자는 징계심의 시 회의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

제 13 장 등 록 금

제70조(등록금)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0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본 대학에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학생·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07.20>

②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2.07.20.>

③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단위별 위원 수, 위원·위원장의 선임방법 및 위원의 임기 등은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에 따라 정한다. <신설 2022.07.20>

제71조(결석 또는 정학시의 등록금) 등록금은 결석·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72조(등록금의 면제) ① 총장은 품행이 바르고 그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국가유공자녀에 대하여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교양교과 이외에는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03.01><개정 2023.08.28><개정 2024.02.29>

제73조(등록금의 반환) ① 수업료·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휴학 중인 자는 휴학기간 내)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 등록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제 14 장 장 학 금

제74조(장학금)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개정 2020.02.01.>

2.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개정 2020.02.01.>
3. 기타 장학규정에 해당하는 자
 - ② 장학생이 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며, 자퇴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④ 지급기준 및 기타 세부사항은 장학규정을 따른다.<신설 2020.02.01.>

제 15 장 교수회 및 대학평의위원회

제75조(구성) 본 대학에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는 교수회를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76조(소집 및 심의) ①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시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 ②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무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2.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3.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6조의2(대학평의위원회) ① 본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는 대학평의위원회를 둔다.

- ② 대학평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6조3(기금운용심의회) ① 본 대학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직원·학생·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신설 2022.07.20>

- ② 기금운용심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규정에 따라 정한다. <신설 2022.07.20.>

제 16 장 교무위원회 및 제위원회

제77조(구성) 본 대학의 학사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01.01.><개정 2019.02.01.>

제78조(소집 및 심의) ①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시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②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2. 시험 및 성적사정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학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제79조(제위원회) ① 본 대학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교육과정심의위원회 및 사안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7 장 학칙 제·개정 절차

제80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의 제·개정을 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1조(공고기간)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03.01.>

제82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본 대학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당해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심의)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은 학칙에 의거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4조(공포절차 및 공포) 제반 학칙의 공포는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포 후 시행한다.

제 18 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85조(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본 대학에는 다음과 같이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을 두며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01. 01.><개정 2018. 03. 01.>

1. 부속기관

가. 도서관

나. 신문방송국

다. 삭제 <개정 2018.03.01.>

라. 전자계산소

마. 삭제 <개정 2022.04.20>

바. 삭제 <개정 2020.02.01.>

사. 삭제 <개정 2023.01.27>

아. 삭제 <개정 2018.03.01.>

자. 삭제 <개정 2023.01.27>

차. 삭제 <개정 2018.03.01.><개정 2022.09.29><개정 2023.01.27>

카. 삭제<개정 2025.08.28>

타. 대학인권센터 <신설 2022.01.26>

2. 부설기관

가. 평생교육원

나. 국제교류원 <개정 2022.01.26>

다. 산학협력단

라. 연성대학교벤처센터

마. 유치원

바. 생활관

제85조의2(도서관의 운영 등) 도서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관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03.01.]

1.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예산, 조직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과 이용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9 장 학교기업설치 및 운영

제86조(학교기업 설치)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대학에 학교기업을 둔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학교기업의 명칭, 사업종목 및 관련학과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02.29>

기업명	사업종목	관련 학과(전공)
플래닛37 (Planet37)	커피 및 기능성 음료의 제조 및 판매	카페·베이커리과

③ 학교기업은 본 대학 교사시설 또는 교지 안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 교육에 필요한 경우 교사시설 또는 교지 밖에 둘 수도 있다.

[전문개정 2019.02.01.]

제87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① 총장은 학교기업을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 및 연구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 결과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02.01.]

제88조(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기준) ① 학교기업에서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수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과 학생에게 순수익의 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수익의 5%를 넘을 수 없다.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용도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순수익 재원의 성격, 순수익 금액의 규모, 관련 교직원과 학생이 학교기업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02.01.]

제89조(학교기업 운영규정) 학교기업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2.01.>

제20장 교육·복지 시설의 수탁 운영

제90조(교육복지시설 수탁) 학교는 법인 정관 제1조(목적)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와 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교육·복지시설을 학교의 운영 능력과 교육적 이익을 고려하여 이를 수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 단체가 위탁하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주간장애보호시설, 어린이집 등 노인·장애인·아동과 관련된 복지시설이나 기관
2. 기업체가 위탁하는 노인·장애인·아동과 관련된 복지시설이나 기관
3. 사회복지법인이 위탁하는 노인·장애인·아동과 관련된 복지시설이나 기관

제91조(운영기준) 수탁기관의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 21 장 보 칙

제92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3조(자체평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자체평가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5월 1일부로 시행한다.

② (학칙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모집단위, 전문학사학위 등은 이 학칙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③ (학부 및 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전자통신학부, 의상디자인과, 실무영어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전자통신정보학부, 패션텍스타일과, 외국어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④ (수업연한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수업연한이 3년으로 연장된 유아교육과의 복학생은 입학당시 수업연한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재입학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② (학부 및 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토목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0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토목환경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② (학부 및 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테크노경영정보학부, 건축과, 식품영양조리과, 패션텍스타일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테크노경영학부, 건축인테리어학부, 호텔조리영양학부, 패션·뷰티디자인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6월 10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② (학부 및 전공 등의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학부 및 전공의 명칭변경 등 개편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학부 및 전공에 소속된 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의 학부 및 전공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다만, 야간의 경우 폐지된 전공이 주간에 개설되어 수강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1. 전자통신정보학부 : 디지털정보통신전공 → 정보통신전공
컴퓨터응용시스템전공 → 컴퓨터응용전공
전자통신정보학부(야간) → 정보통신전공
2. 경영정보학부(야간) → 마케팅경영전공
3. 컴퓨터정보학부 : 웹마스터전공 → 유비쿼터스정보응용전공

웹멀티미디어전공 → 웹콘텐츠전공

컴퓨터정보학부(야간) → 유비쿼터스정보응용전공

4. 산업디자인학부(야간) → 시각디자인전공
5. 외국어학부 → 관광외국어학부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 ② (계열 및 학부(과)/전공 등의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개편된 계열 및 학부(과)/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열 및 학부(과)/전공에 소속된 재적생으로 본다.
 1. 산업디자인학부 : 시각디자인전공 → 시각디자인과
제품디자인전공 → 시각디자인과
컴퓨터그래픽전공 → 광고영상디자인과
 2. 패션뷰티디자인학부 : 패션스페셜리스트전공 → 패션스타일리스트전공
 3. 경영정보학부(공학계열) → 경영학부(인문사회계열)
 4. 전문사관과(공학계열) → 전문사관과(인문사회계열)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 ② (학부·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개편된 학부(과)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학부, 과에 소속된 재적생으로 본다.
 1. 전자통신정보학부 : 디지털정보전자전공 → IT학부 : 디지털전자과
정보통신전공 → 정보통신과
컴퓨터응용전공 → 컴퓨터응용과
 2. 컴퓨터정보학부 : 유비쿼터스정보응용전공 → IT학부 : 컴퓨터소프트웨어과

모바일인터넷전공 → 컴퓨터소프트웨어과

웹콘텐츠전공 → 인터넷정보과

3. 건축인테리어학부 : 건축전공 → 공간디자인학부 : 건축과

인테리어디자인전공 → 인테리어디자인과

4. 호텔조리영양학부 : 식품영양전공 → 인간개발학부 : 식품영양과

호텔조리전공 → 관광학부 : 호텔조리과

5. 관광외국어학부 : 영어전공 → 관광학부 : 관광영어과

관광중국어전공 → 관광중국어과

호텔관광전공 → 호텔관광과

6. 경영학부 : 기업경영전공 → 기업경영과

마케팅경영전공 → 마케팅경영과

e-비즈니스전공 → e-비즈니스경영과

7. 패션뷰티디자인학부 : 패션스타일리스트전공 → 디자인학부 : 패션스타일리스트과

뷰티스타일리스트전공 → 뷰티스타일리스트과

③ (수업년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2년제 또는 3년제 학과를 선택하여 복학할 수 있다.

④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복학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에 사용된 총장명칭은 이 학칙에 의거 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7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2월 1일부로 시행한다.

② (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인테리어디자인과와 전문사관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실내건축과, 군사학과
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 ② (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컴퓨터응용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디지털전기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5월 23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 ② (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인터넷정보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컴퓨터소프트웨어과의 재적생으로 본
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8월 26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 ② (과명 변경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
하여 졸업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종전의 학과	개편된 학과	졸업학년도
디지털전기과	전기과	2016
호텔조리과	호텔외식조리과 호텔조리전공	2015
푸드스타일링과	호텔외식조리과 호텔외식경영전공	2015
패션스타일리스트과	패션산업과	2016
뷰티스타일리스트과	뷰티스타일리스트과 헤어디자인전공	2015
	뷰티스타일리스트과 메이크업전공	2015
뷰티에스테틱과	뷰티스타일리스트과 스킨케어전공	2015
기업경영과 마케팅경영과	경영학과 유통경영전공	2015
	경영학과 마케팅경영전공	2015
	세무회계과	2015
관광영어과	관광과 관광영어전공	2015
관광중국어과	관광과 관광중국어전공	2015
호텔관광과	관광과 호텔관광전공	2015
사회체육과	스포츠케어과	2015
광고영상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디지털미디어전공	2015
	시각디자인과 시각정보디자인전공	2015
	시각디자인과 산업그래픽전공	2015
e-비즈니스과	폐과로 인하여 유사학과로 편입	2015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4월 10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8월 29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과명 변경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졸업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1. 경영학과 : 유통경영전공 → 유통물류과
마케팅경영전공 → 경영학과
2.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전공 → 사회복지과
아동보육복지전공 → 사회복지과
3. 시각디자인과 : 산업그래픽전공 → 시각정보디자인전공

③ (야간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야간의 폐지로 인하여 소속 학과의 야간으로 복학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학과의 주간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과명 변경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졸업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1. 패션산업과 → 패션디자인비즈니스과
2. 시각디자인과: 시각정보디자인전공 → 시각디자인과
디지털미디어전공 → 영상콘텐츠과, 시각디자인과

- ③ (야간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야간의 폐지로 인하여 소속 학과의 야간으로 복학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학과의 주간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업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학칙 제14조(수업일수)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재난, 감염병 등 위기단계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수업방식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과명 변경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졸업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1. 식품영양과 → 식품영양학과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원정원), 제10조(수업연한)에 관한 사항은 202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② (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졸업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1.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전공
2. 아동보육과 → 사회복지과 아동심리보육전공
3. 스포츠케어과 → 스포츠재활과
③ (수업년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2년제 또는 3년제 학과를 선택하여 복학할 수 있다.
④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복학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토목환경과 → 유사학과 <신설 2023.01.27.>
2. 유사학과: [별표5] 종별구분 기준에 준한다. <신설 2023.01.27.><개정 2025.8.28.>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0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0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원정원), 제10조(수업연한)에 관한 사항은 202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② (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졸업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1. 디지털전자과 → 전자공학과
2. 반려동물과 → 반려동물보건과

③ (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2년제 또는 3년제 학과를 선택하여 복학할 수 있다.

④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학생은 복학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관광과 관광중국어전공 → 유사학과 <신설 2023.01.27.>
2. 유사학과: [별표5] 종별구분 기준에 준한다. <신설 2023.01.27.><개정 2025.08.28>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0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졸업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1. 영상콘텐츠과 → 영상콘텐츠과 영상콘텐츠제작전공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0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0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0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0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10조(수업연한)에 관한 사항은 202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② (학과 신설) 2024학년도에 반려동물산업과, 치위생과, 치기공과, 응급구조과를 신설한다.

③ (학과(전공)명 변경 및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졸업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개정 전 학과(전공)	개정 후 학과(전공)	변경내용
호텔외식조리과 호텔조리전공	호텔외식조리과	명칭변경
호텔외식조리과 카페·베이커리전공	카페·베이커리과	전공 통합
호텔외식조리과 호텔외식경영전공		
관광과 관광영어전공	관광영어과	명칭변경
관광과 호텔관광전공	호텔관광과	명칭변경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0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10조(수업연한), 제28조2(자유전공학과 전공배정)에 관한 사항은 202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② (학과 신설) 2025학년도에 작업치료과, 자유전공학과를 신설한다.

③ (학과(전공)명 변경 및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졸업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단, 교원양성학과로 편입되는 경우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교원양성과정 승인인

원 범위 내에서 교원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개정 전 학과(전공)	개정 후 학과(전공)	변경내용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학과 통합
유아특수재활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과	학과 통합
사회복지과 아동심리보육전공		
군사학과	국방군사학과	명칭 변경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0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 10조(수업연한)에 관한 사항은 202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② (학과 신설) 2026학년도에 간호학과를 신설한다.

③ (학과(전공)명 변경 및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졸업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개정 전 학과(전공)	개정 후 학과(전공)	변경내용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	학과 통합
정보통신과		
유통물류과	경영학과	학과 통합
경영학과		
영상콘텐츠과 영상콘텐츠제작전공	영상콘텐츠과	학과 통합
영상콘텐츠과 뉴미디어콘텐츠전공		

④ (기타 조문 정비) 종전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5조의4는 제5조로 이동·개정함에 따라 삭제하며, 종전 [별표1]과 [별표2]는 각각 [별표5]와 [별표6]으로 이동한다.

[별표1]<신설 2025.08.28>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전문학사학위, 학사학위과정)

계열	학과	수업연한	입학정원(주간)	비고	
공학	전자공학과	3	35		
	전기과	3	55		
	컴퓨터소프트웨어과	3	75		
	게임콘텐츠과	3	70		
	건축과	3	58		
	실내건축과	3	64		
자연과학	식품영양학과	3	50		
	호텔외식조리과	2	96		
	카페·베이커리과	2	70		
	보건의료행정과	3	70		
	패션디자인비즈니스과	3	66		
	뷰티스타일 리스트과	헤어디자인전공	2	80	
		메이크업전공	2	60	
		스킨케어전공	2	60	
	반려동물보건과	3	55		
	반려동물산업과	2	35		
	치위생과	3	33		
	치기공과	3	60		
	응급구조과	3	50		
	작업치료과	3	30		
간호학과	4	40	학사학위		
인문사회	경영학과	2	60		
	세무회계과	2	60		
	유아교육과	3	108		
	사회복지과	3	64		
	사회복지경영과	2	30		
	국방군사학과	2	35		
	관광영어과	2	35		
	호텔관광과	2	70		
	항공서비스과	2	114		
	경찰경호보안과	2	72		
	자유전공학과	2	25		
예체능	시각디자인과	3	66		
	영상콘텐츠과	3	70		
	스포츠재활과	2	60		
	웹툰만화콘텐츠과	3	60		
	K-POP과	3	50		
합계			2,191		

[별표2]<신설 2025.08.28>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계열	과정(학과)명	수업 연한	입학정원			비고
			주간	야간	계	
공학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1	-	25	25	산업체 경력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건축학과	1	-	30	30	
	실내건축학과	1	-	35	35	
자연과학	식품영양학과	1	-	25	25	
	뷰티스타일리스트학과	2	25	-	25	
	보건의료행정학과	1	-	30	30	
	카페·베이커리학과	2	20	-	20	
인문사회	경영학과	2	-	25	25	
	유아교육학과	1	-	90	90	
	사회복지학과	1	-	50	50	
	항공서비스학과	2	-	30	30	
합계			45	340	385	

[별표3]<신설 2025.08.28>

계약학과의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계열	과정(학과)명	수업 연한	입학정원			비고
			주간	야간	계	
자연과학	호텔외식조리과 스마트F&B서비스전공	2	-	40	40	일학습 병행사업
	호텔외식조리과 스마트양식조리전공	2	-	30	30	
합계			0	70	70	

[별표4]<신설 2025.08.28>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계열	전공	수업연한	입학정원
			야간
공학	통합건축ICT마이스터과정	2	10
합계		2	10

[별표5]<개정 2017.03.01, 2018.01.05, 2019.02.01, 2020.02.01, 2021.03.01, 2021.06.10., 2021.09.27, 2021.11.19, 2022.04.20, 2022.06.24, 2023.01.27, 2023.08.28, 2024.02.29., 2024.08.29., 2025.02.26.><개정 2025.08.28.>

전문학사, 학사학위 및 전문기술석사 종별

종별	해 당 학 (부) 과	비고
공학전문학사	전자과, 전자통신과, 통신과, 토목과, 건축과, 공업경영과, 전자계산과, 제어계측과, 품질관리과, 전산사무정보학부, 디지털전기과, 전기제어과, 전기전자통신학부(정보전자전공, 무선정보통신전공, 시스템제어전공, 컴퓨터응용전공), 컴퓨터정보학부(웹마스터전공, 웹정보처리전공, 인터넷컴퓨팅전공, 웹멀티미디어전공, 모바일인터넷전공, 유비쿼터스정보응용전공, 웹콘텐츠전공), 테크노경영정보학부, 전자통신정보학부(디지털정보전자전공, 디지털정보통신전공, 정보통신전공, 컴퓨터응용시스템전공, 컴퓨터응용전공), 토목환경과, 테크노경영학부(시스템경영전공, 마케팅경영전공, 인터넷경영전공), 건축인테리어학부(건축전공, 인테리어디자인전공), 경영정보학부(기업경영전공, 마케팅경영전공, e-비즈니스경영전공), 디지털전자과, 정보통신과, 컴퓨터응용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과, 게임콘텐츠과, 인터넷정보과, 인테리어디자인과, 전기과, 건축과, 실내건축과, 전자공학과	
디자인전문학사	산업디자인과, 의상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산업디자인학부(산업디자인전공,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제품디자인전공, 컴퓨터그래픽디자인전공), 패션텍스타일과, 패션, 뷰티디자인학부(패션스페셜리스트전공, 뷰티스타일리스트전공), 광고영상디자인과, 패션스타일리스트과, 뷰티스타일리스트과, 뷰티에스테틱과, 시각디자인과 시각정보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과 디지털미디어전공, 시각디자인과 산업그래픽전공, 영상콘텐츠과, 영상콘텐츠과 영상콘텐츠제작전공, 영상콘텐츠과 뉴미디어콘텐츠전공	
패션전문학사	패션산업과, 패션디자인비즈니스과	
미용전문학사	뷰티스타일리스트과 헤어디자인전공, 뷰티스타일리스트과 메이크업전공, 뷰티스타일리스트과 스킨케어전공	
동물보건전문학사	반려동물과, 반려동물보건과	
식품영양전문학사	식품영양과, 식품영양학과	
사무자동화전문학사	사무자동화과	
교육전문학사	유아교육과	
실무영어전문학사	실무영어과	
체육전문학사	사회체육과, 스포츠케어과, 스포츠재활과	
식품학전문학사	식품영양조리과, 호텔조리영양학부(식품영양전공, 호텔조리전공), 호텔조리과, 푸드스타일링과, 호텔외식조리과 호텔조리전공, 호텔외식조리과 호텔외식경영전공, 호텔외식조리과 카페·베이커리전공, 호텔외식조리과 스마트F&B서비스전공, 호텔외식조리과 스마트양식조리전공, 호텔외식조리과, 카페·베이커리과	
영어전문학사	외국어학부(영어전공), 관광외국어학부(영어전공), 관광영어과, 관광과 관광영어전공	
중국어전문학사	외국어학부(관광중국어전공), 관광외국어학부(관광중국어전공), 관광중국어과, 관광과 관광중국어전공	
관광전문학사	관광외국어학부(호텔관광전공), 호텔관광과, 항공서비스과, 관광과 호텔관광전공	

종별	해 당 학 (부) 과	비고
군사전문학사	전문사관과, 군사학과, 국방군사학과	
특수교육전문학사	유아특수재활과	
사회복지전문학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과 아동보육복지전공, 사회복지경영과	
아동보육전문학사	이동보육과	
보육복지전문학사	사회복지과 아동심리보육전공	
경영전문학사	기업경영과, 마케팅경영과, e-비즈니스경영과, 경영학과, 세무회계과, 경영학과 유통경영전공, 경영학과 마케팅경영전공, 유통물류과	
간호학사	간호학과	학사학위
보건전문학사	보건의료행정과	
작업치료전문학사	작업치료과	
치위생전문학사	치위생과	
치기공전문학사	치기공과	
동물산업전문학사	반려동물산업과	
응급구조전문학사	응급구조과	
경찰행정전문학사	경찰경호보안과	
문화콘텐츠전문학사	웹툰만화콘텐츠과	
예술전문학사	K-POP과	
건축공학전문학사	건축과(공학인증과정)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기술전문학사	컴퓨터소프트웨어과(공학기술학위과정)	
공학사	건축과, 토목환경학과, 건축학과, 실내건축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전공심화
경영학사	경영학과	전공심화
이학사	호텔조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카페·베이커리학과	전공심화
교육학사	유아교육학과	전공심화
군사학사	군사학과	전공심화
관광학사	항공서비스학과, 호텔외식경영학과	전공심화
보건학사	보건의료행정학과	전공심화
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학과	전공심화
미용학사	뷰티스타일리스트학과	전공심화
전문기술석사	통합건축ICT마이스터과정	전문기술석사

※ 보건의료행정과 학생 중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문 학위증에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과정 이수’, 영문 학위증에 ‘Completion of the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curriculum’ 로 표기함. <신설 2022.06.24.>

※ 자유전공학과의 경우, 전공배정에 따라 학위명을 별도로 정함<신설 2024.08.29.>

[별표6] <신설 2025.02.26.> <개정 2025.08.28.> <개정 2026.02.00.>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동일계열, 관련학과

계열	과정(학과)명	관련 학과명(해당과)
공학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과, 게임콘텐츠과, 소프트웨어정보과, 웹컴퓨터과, 웹프로그래밍과, 전산정보처리과, 전산커뮤니티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과, 컴퓨터과학과, 컴퓨터네트워크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과, 컴퓨터웹정보과, 컴퓨터응용과, 컴퓨터정보관리과, 컴퓨터정보보안과, 컴퓨터정보시스템과, 컴퓨터정보처리과, 정보보안.해킹과, 소프트웨어개발과, 임베디드소프트웨어과, 컴퓨터그래픽디자인과, 컴퓨터미디어기술과, 컴퓨터시스템과, 컴퓨터정보기술과, 컴퓨터프로그래밍과, 모바일컴퓨터과, 웹·컴퓨터응용계열, 인터넷컴퓨터과, 인터넷프로그래밍전공, 전자계산과, IT비즈니스과, 회계전산학과 등 유사학과
	건축학과	실내건축과, 건축리모델링과, 건축설비과, 실용건축과, 건축환경과, 건축환경시스템과, 실내건축과, 실내건축전공, 공간디자인학부 건축전공, 공간유지보수 전공, 건축설계과, 건축소방안전과, 건축환경디자인계열, 건축환경시스템과, 빌딩설비시스템과, 산업설비제어과, 건축토목계열, U-건설디자인계열, 건설정보공학과, 건축인테리어과, 건축계열, 건축과, 건축공병계열, 건축조형계열, 리모델링건축과, 한옥문화산업과, 건축에너지과 등 유사학과
	실내건축학과	건축과, 건축인테리어과, 건축설비디자인과, 공간리모델링과 리모델링인테리어과, 실내공간인테리어과, 인테리어디스플레이과, 인테리어디자인과, 인테리어리모델링과, 인테리어코디네이션과, 건축실내디자인과, 건축인테리어학부, 실내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 공간연출과, 공간관리계열, 한옥문화산업과, 크루즈해양인테리어과, 조명인테리어과 등 유사학과
자연과학	식품영양학과	호텔외식조리과, 카페베이커리과, 호텔외식조리과 호텔외식경영전공, 식품영양조리과, 다이어트건강관리과, 식품계열, 식품영양전공 등 유사학과
	보건의료행정학과	보건행정학과, 의료경영학과, 병원경영학과, 병원의료행정과, 의료경영정보학과, 의무기록정보학과, 의료정보학과, 의무기록정보학과, 의무행정정보과, 보건관리학과, 보건의료정보과, 보건경영학과, 의무행정과, 병원행정과, 병원의료행정과, 보건의료행정과, 병원경영과, 의료복지과, 의료보험심사과, 의료전산시스템과, 의료정보관리과, 의료정보시스템과, 의무기록정보과, 의약정보관리과 등 유사학과
	뷰티스타일리스트학과	패션디자인비즈니스과, 뷰티스타일리스트과 헤어디자인전공·메이크업전공·스킨케어전공, 뷰티케어과, 뷰티미용과, 뷰티아트과, 미용피부관리과, 피부미용디자인과, 관광뷰티디자인과, 메이크업코디과, 미용예술과, 뷰티디자인과, 피부비만관리과, 미용계열, 뷰티코디네이션과, 피부보건과, 화장품과학과, 뷰티아트디자인과, 스타일리스트과, 코디메이크업과, 화장품미용과, 미용아트과, 헤어디자인과, 방송메이크업전공, 방송모델과, 방송연예코디과, 뷰티건강복지과, 스킨케어과, 스파테라피과, 의료미용과, 웨딩&이벤트과, 웨딩뷰티패션과, 토탈뷰티디자인과, 패션스타일리스트과 등 유사학과
카페·베이커리학과	식품영양학과, 호텔외식조리과, 호텔외식조리과 호텔외식경영전공, 카페·베이커리과, 제과제빵산업과, 호텔제과제빵과, 식품가공제과제빵 등 유사학과	

계열	과정(학과)명	관련 학과명(해당과)
인문 사회	유아교육학과	유아특수재활과, 사회복지과 아동심리보육전공, 아동학과, 유아교육학과, 아동교육상담과, 아동학습지도과, 아동미술교육과, 특수복지교육과, 유아영어지도과, 유아특수보육과, 장애유아보육과, 유아체육전공 등 유사학과
	항공서비스학과	여행항공과, 항공여행정보과, 항공운항과, 호텔항공과, 관광항공서비스과, 항공비서행정과, 스텐더디스과, 항공비서행정과, 항공운항과, 항공관광과, 관광항공승무과, 관광과, 관광경영과, 항공서비스과, 항공컨벤션경영과, 관광항공철도승무과, 항공실무서비스과, 항공서비스복지학부, 항공관광영어과등 유사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특수재활과, 사회복지과 아동심리보육전공, 사회복지경영과, 가족복지과, 가족사회복지과, 복지경영과, 복지상담과, 복지행정과, 복지상담과, 사회복지비서행정과, 사회복지행정과, 사회복지상담과, 경찰복지과, 아동청소년복지과, 행정복지과, 노인보건복지과, 보건복지계열, 보건사회복지과, 의료복지과, 복지관광과, 실버복지경영과, 실버복지과, 실버케어복지과, 케어복지과, 케어사회복지과, 실버케어보건복지과, 사회복지과, 보건복지계열, 아동노인복지과, 산업복지경영과, 관광레저복지과, 건강복지과, 노인복지상담과, 선교복지전공 등 유사학과
	경영학과	사회복지경영과, 유통물류과, 세무회계과, 인터넷경영정보과, 인터넷산업경영과, 경영관리과, 비즈니스경영과, 서비스경영과, e-비즈니스과, 경영정보과, 마케팅과, 세무회계정보과, 무역과, 유통경영과, 디지털마케팅과, 물류유통정보과, 샵마스터마케팅과, 세무회계과, 샵마스터경영과, 상경계열, 창업경영과, 철도경영과, 철도운수경영과, 디지털경영과, 협동조합경영과, 기업경영과, 골프산업경영과, 관광외식경영과, 호텔관광경영과, 글로벌비즈니스과, 물류경영과, 산업경영과, 인터넷전자상거래과 등 유사학과

YEONSUNG UNIVERSIT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has conferred upon

(영문성명) ○○○○

the associate degree of

Major 영문학위명 ○○○ in 영문학과명 ○○○
Minor in 영문학과명 ○○○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honors and responsibilities
thereto pertaining given at Yeonsung University
On the [Day] of [Month], [Year]

President ○○○ (서명)

Registration Number : YEONSUNG-0000-0000

제 000 호

학 위 증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아래의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전문학사 자격을 취득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학과명 ○○○ (학위명 ○○○)
학과명 ○○○ (학위명 ○○○)

년 월 일

연성대학교 총장 ○○○ (직인)

학위등록번호 : 연성-년도-000

YEONSUNG UNIVERSIT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has conferred upon

(영문성명) ○○○○

the associate degree of

Major 영문학위명 ○○○○ in 영문학과명 ○○○○
Minor in 영문학과명 ○○○○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honors and responsibilities
thereto pertaining given at Yeonsung University
On the [Day] of [Month], [Year]

President ○○○○ (서명)

Registration Number : YEONSUNG-0000-0000

제 000 호

학 위 증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아래의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전문학사 자격을 취득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전공 학과명 ○○○○ (학위명 ○○○○)
부전공 학과명 ○○○○ (학위명 ○○○○)

년 월 일

연성대학교 총장 ○○○○ (직인)

학위등록번호 : 연성-년도-000

YEONSUNG UNIVERSIT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has conferred upon

(영문성명) ○○○○

the bachelor's degree of

영문학위명 ○○○ in 영문학과명 ○○○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honors and responsibilities
thereto pertaining given at Yeonsung University

On the [Day] of [Month], [Year]

President ○○○○ (서명)

Registration Number : YEONSUNG(BACHELOR)-0000-0000

제 000 호

학 위 증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아래의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학사 자격을 취득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학과명 ○○○(학위명 ○○○)

년 월 일

연성대학교 총장 ○○○○ (직인)

학위등록번호 : 연성(학사)-년도-000

YEONSUNG UNIVERSIT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has conferred upon

(영문성명) ○○○○

the master's degree of professional technology

in 영문학과명 ○○○○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honors and responsibilities
thereto pertaining given at Yeonsung University

On the [Day] of [Month], [Year]

President ○○○○ (서명)

Registration Number : YEONSUNG(MASTER)-0000-0000

제 000 호

학 위 증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아래의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전문기술석사 자격을 취득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학과명 ○○○○(학위명 ○○○○)

년 월 일

연성대학교 총장 ○○○○ (직인)

학위등록번호 : 연성(전문기술석사)-년도-000

YEONSUNG UNIVERSITY

This is to certify that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prescribed course of study in

and has been granted the associate degree having satisfied the requirements by article 9 of the Regulations on Credit Recognition and Article 50 of the University Regulations.

President ○○○○ (서명)

Registration Number : YEONSUNG-0000-0000

제 000 호

학 위 증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학년도 본 대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연성대학교 총장 ○○○○ (직인)

학위등록번호 : 연성-년도-000